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19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11. 13.
- 라. 회부일자 : 2024. 11. 13.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 대상 : (재)금천문화재단
- 나. 출연 필요성
 - 1)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2)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25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의결
- 다. 2025년 예산액
 - 1) 문화재단 총 예산액 : 금10,466,583천원
 - 2) 출연금 요구액 : 금9,336,325천원

4. 참고사항

가. 과목별 편성내역, 지출예산총괄(부서별)

나.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출연의 필요성은
(재)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금천구 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함.
- 본 동의안의 의결 범위를 보면,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